

의안번호	제 110 호
의결연월일	1999. 9. 17

**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
부과·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**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9. 9. 6 예산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1999. 9. 10
- 다. 상 정 일 자 : 1999. 9. 16
제72회 예산군의회(임사회)
제1차 조례안등안전심사특별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(보건소장 : 김현규)

가. 제 안 이 유

- 국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조성
을 위해 시행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과 기준
등 일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함.

나. 주 요 골 자

- 과태료 부과대상 중 “법 제9조3항2조에 의하여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
매한 자 및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

한 자”라는 규정을 삭제하고, 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”라는 규정 신설(안 제2조)

- 관계 공무원의 위법사실에 대한 조사시 자인서 징구제도 폐지(안 제4조)
-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(안 별표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이원용)

- 본 개정 조례안은 '99. 2. 8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의 변경 및 과태료 상한선 인상 사항 등을 적용하고, 과태료 처분전 사전통지토록 규정하여 처분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, 관련 서식 등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결의·답변 및 토론요지

- 없 음

5. 심 사 결 과

- 원 안 가 결